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5
2. 총괄적 검토	8
3. 조문별 검토	11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13
나. 정의 규정	16
다. 국가 등의 책무	20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실행계획	22
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26
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28
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33
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37
자.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42

차.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축 근거 마련	48
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학습용 데이터의 관리	51
파.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55
하. 인공지능 영향평가	5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25.

나. 회부연월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인공지능 및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공지능·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책임관 협의회 설치·운영 등 인공지능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이행,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영향평가 및 위험관리로 신뢰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

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정함을 명시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일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개정하여 그 정의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포함하고 효율적이고 객관적·과학적일 것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제3호·제5호).

라.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마.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신뢰성 확보 계획 등을 추가하고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작성 시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며, 시행계획 포함 사항으로 학습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추가함(안 제6조, 제7조).

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운영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학습

용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책임관 업무로 추가하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아.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역할을 추가함(안 제21조).

자.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공공기관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산업의 진흥,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차.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도록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등 전 단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 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파.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공정성·투명성 등 신뢰기반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 등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31조 신설).

거.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영향평가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2010년대 딥러닝의 등장으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졌고, 2016년 알파고에 이어 2022년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은 심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력이나 자원·자본 규모 등은 미·중과 비교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인공지능의 효과성·안전성·신뢰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전환(AI transformation)을 관망하는 경향이 있음.¹⁾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401개 중 243개 기관(60.6%)에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 업무 효율화 분야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생성형 의사결정이기보다는 주로 단순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됨.

1) ‘인공지능(AI) 시대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5.9.9.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

구 분	사 례
대국민 서비스 혁신	• AI일자리 추천 서비스(고용노동부, '20.7월~) • AI기반 개인맞춤형 보훈 재가 복지 솔루션(국가보훈부, '24.6월~) • AI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24.7월~) • AI기반 교통약자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서울특별시, '24.12월~)
사회문제 해결 사례	• 가축전염병 위험도 예측 모델(농림축산식품부, '24.12월~) • 국립공원 산불연기감지 지능형 CCTV(환경부, '24.9월~) • AI CCTV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서울특별시, '23년 말~)
업무 효율화 사례	• 산재보험 AI의학자문 지원모델 구축(고용노동부, '24.5월~) • 부당청구감지 AI모델 구축(보건복지부, '24.8월~) • AI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시스템(특허청, '24.1월~)

자료 : 행정안전부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가속화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투자 및 공급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²⁾

지난 9월 국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글로벌 첨단과학 기술패권 경쟁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분야 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범정

2) “AI, 민원 편의성도 높인다…공공 도입 속도 내야”, 전자신문, 2024.9.23., “인공지능 시대...공공의 역할과 할 일”, 디지털비즈온, 2024.7.9.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음.³⁾

또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정부 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⁴⁾

그런데 현행법⁵⁾은 이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 목적 규정(안 제1조), 정의 규정(안 제2조),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등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적 인공지능 전환(이하 “AX”) 전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행정 기반 구축 및 책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제2212965호), 행정안전위원회, 2025. 9.

4)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칸막이 전자정부 끝내겠다””, 아시아경제, 2025.9.29., “국가AI전략위 “국정자원 화재 계기 칸막이 전자정부 끝내겠다””, 연합뉴스, 2025.9.29.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5)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되었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본칙에 제5장 7개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25개 조문 중 17개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법의 구성체계 및 규율 범위 등 전반적 부분을 개편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장 제목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으로 수정하고, 제5장(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을 신설하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안 제18조 및 제21조), 공통기반의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안 제27조 및 제28조),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등이며, 개정안의 전반적인 구성체계 및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각 조의 구체적인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 참조).

[현행 및 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u>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인공지능’ 추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공지능’ 및 ‘신뢰기반 조성’을 명시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공지능’ 및 ‘학습용 데이터’라는 용어 정의 신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인공지능’ 및 ‘신뢰기반 조성’을 추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의 활용 시 해당 공공기관에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명시(제5항 신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2장 추진 체계	제2장 추진 체계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제5조(<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6조(<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기본계획)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기본계획에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명시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의결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시행계획)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정사항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4장 <u>데이터기반행정</u> 의 기반 구축	제4장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의 기반 구축	-장제목에 ‘인공지능’ 추가
제17조(<u>데이터기반행정</u> 표준화)	제17조(인공지능 및 <u>데이터기반행정</u> 표준화)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제19조(<u>데이터기반행정</u> 책임관)	제19조(인공지능 및 <u>데이터기반행정</u> 책임관)	-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업무에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20조(<u>데이터</u> 분석센터)	제20조(<u>인공지능</u> 데이터분석센터)	-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 ‘데이터 분석 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으로 확대
제21조(<u>데이터기반행정</u> 전문기관)	제21조(인공지능 및 <u>데이터 기반 행정</u> 전문기관)	-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 전문기관의 업무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 공통기반 구축, 인공지능 윤리 원칙 등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추가
제22조(<u>데이터기반행정</u>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2조(인공지능 및 <u>데이터 기반 행정</u> 실태 점검 및 평가)	-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23조(<u>데이터기반행정</u>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제23조(인공지능 및 <u>데이터 기반 행정</u>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24조(<u>데이터</u>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4조(인공지능 및 <u>데이터</u>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조제목 및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 조문에 ‘인공지능’ 추가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정사항
<신 설>	<u>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 협회의 설립)</u>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 - 기술과 산업 진흥, 제도 개선 건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협회의 업무로 규정 - 행안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
<신 설>	<u>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u>	-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조항과 신뢰기반 조성 관련 조항으로 구성된 장을 신설
<신 설>	<u>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u>	- 행안부장관과 과기정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
<신 설>	<u>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u>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 - 인공지능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함을 규정
<신 설>	<u>제29조(학습용 데이터의 관리)</u>	-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 - 행안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을 규정
<신 설>	<u>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u>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여 공표함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정사항
<u><신 설></u>	<u>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u>	- 행안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함을 규정 -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함을 규정
<u><신 설></u>	<u>제32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u>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을 규정 -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3. 조문별 검토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입법 목적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에 관한 법률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u>데이터</u> 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u>활성화</u>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객관적이고 과학적인</u>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인공지능 및 데이터</u> 를----- <u>활성화와 신뢰 기반</u> 조성에----- <u>효율적 · 객관적 · 과학적</u> ----- ----- ----- -----.

이는 공공부문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등 AX 전략의 본격 추진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조 중 “신뢰 기반 조성”⁶⁾이라는 자구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이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제2항제5호는 인공지능 기본계획⁷⁾에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9호⁸⁾는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을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법률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개정안 부칙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6)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1.21. 제정)이 시행(2026.1.21.)을 앞두고 있음.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보임.

이 경우 조문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할 수 있겠음.

나. 정의 규정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변경하여 그 정의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포함하며 효율적이고 객관적·과학적인 행정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생략)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생략)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 ----- ----- -----효율적·객관적·과학적----- -----.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 <u>학습용 데이터</u> ”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 핵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공공부문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조제1호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1호를 인용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 및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⁹⁾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보임.

더욱이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¹⁰⁾ 등으로 구분·정의하고 있는바, 이 중 ‘생성형 인공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¹¹⁾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요 용어에 대한 통일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법제상 안 제2조제3호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단일 용어로 변경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법체계상 측면을 보더라도 현행법 제3장(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에서는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다음과 같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3장의 제목 및 해당 조문을 변경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정의 규정에서 두 가지 용어를 단일 용어로 표현·정의하는 것은 정합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기반 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각각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를 분리하여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다. 국가 등의 책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위를 현행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신뢰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 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u>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신뢰기반 조성</u>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데이터기반행정을</u>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공공기관은 <u>인공지능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u>
⑤ 공공기관은 <u>데이터기반행정을</u>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

이는 인공지능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활용 결과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¹²⁾은 배포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미국 텍사스주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법」¹³⁾(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TRAIGA), 2025.6.)은 주 정보자원부 산하 AI 위원회가 주 정부 전반의 AI 활용 현황을 감독하여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할 피해의 예방을, 캐나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지침」¹⁴⁾(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2019)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정의 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수용할 경우 안 제3조제1항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를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의”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12) 「AI Act」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 책임주체는 AI 시스템의 제공자 또는 배포자이고, 만약 정부가 고위험 AI를 도입했다면 정부기관(배포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13) AI를 활용하는 주 정부기관은 웹사이트에서 AI와 상호 작용할 경우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활용 금지 범위(사회평가 및 차별을 유발하는 의도적 설계 등)를 규정하며 주 정보자원부 산하 AI 위원회가 주 정부 전반의 AI 활용 현황을 감독하여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함.

14) 「Directive」 6. 3 연방정부 부처는 AI 시스템 사용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복구 조치 및 설명 책임을 가짐.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개정안은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촉진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데이터기반행정을</u>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활성화 기본계획) ①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1.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2.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2.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3. 주요 분야별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대책	3.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u><신 설></u> 7. 그 밖에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⑤ (생 략)	6.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7.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8.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계획</u> 9.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④ ----- ----- ----- ----- ----- ----- ---. <u>이 경우 작성 지침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	---

이는 인공지능 도입·활용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¹⁵⁾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같은 법 제5조제2항¹⁶⁾은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¹⁷⁾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안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 입법 개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음.

15)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¹⁸⁾은 기본계획에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개정안은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u>데이터기반행정</u> 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직전 연도의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1.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	2. -----

당 연도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계획 3. <u>데이터기반행정</u>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생략) 6. 그 밖에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3.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4. -----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관리----- 5. (현행과 같음) 6.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④ (현행과 같음)
--	---

이는 공공기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에 인공지능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개정안은 현행 제4장 제목에 “인공지능”을, 데이터기반행정을 지원하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활용 범위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는 한편,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이를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4장 <u>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u>	제4장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u>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데이터 분석</u>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4. <u>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u> <u>등</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및 제30조에

③ (생략)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현행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이 있음.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¹⁹⁾은 공공기관 등이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등록·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7월 기준 총 802개 공공기관 등에서 20,112건(누적)을 등록함.

[기관별 등록현황(802개 기관, 20,112건 누적등록)]

(‘25.7월말 기준)

구분	소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교육청 등)
공동활용 데이터	20,112건	6,091건	8,475건	5,066건	480건

자료 :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구조, 속성 등을 알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19) 주요 기능으로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선정기준에 따라 자율등록 및 행안부 지정데이터를 등록 ② 공동활용 데이터의 활용범위(중앙부처, 특정기관·부서 지정 등)에 따른 제공 및 데이터 검색, 신청, 활용결과를 등록하는 것임.

위한 것으로,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2025년 기준 총 830개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음.²⁰⁾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설치현황]

(‘25.7월말 기준)

구분	소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교육청 등)
구축현황	830개	48개	243개	522개	17개

자료 :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²¹⁾은 공공기관 등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분석환경과 다양한 분석모델 및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말 기준 총 127,726명이 사용하고 있음.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이용현황]

(‘25.8월말 기준)

구분	소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사용자수	127,726명	10,714명	111,511명	4,711명	779명

자료 : 행정안전부

20) 주요 기능으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기관메타관리시스템),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서 전송된 메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간 관계는 데이터맵을 통해 관리(중앙메타관리시스템)하는 것임.

21) 주요 서비스로는 데이터 분석 전문지식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셜분석 및 온라인분석과 일정 지식이 필요한 표준분석모델, 분석환경 서비스 등임.

개정안은 현행 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기능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으로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를 통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학습용 데이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2조제5호는 학습용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관리하는 데이터 중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는바, 학습용 데이터는 “데이터”의 하위개념에 해당함.

현행법 제8조²²⁾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각 호에 열거된 분야와 관

22)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런하여 데이터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같은 조 제2항)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여러 기관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조사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따라서 학습용 데이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록 여부의 판단 주체는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안제18조제3항 중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는 현행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안제18조제3항을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0조로 이 동시키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학습용 데이터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로 수정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 학습용 데이터 등을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하는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시스템 정비·개선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개정안은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 범위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도입·활용 시 신뢰성 확보,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지원 등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u>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u>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 <u>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u> ”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u>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u> -----.
② <u>데이터기반행정</u>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1.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1.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2. <u>데이터기반행정</u>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2.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3. 제16조에 따른 <u>데이터관리체계</u> 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3. ----- <u>데이터관리체계</u> <u>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u>

지원 <신 설>	<u>데이터 관리를-----</u>
	<u>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u> <u>되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u> <u>업무 총괄 및 지원</u>
4. 그 밖에 <u>데이터기반행정</u> 에 관 한 업무 <신 설>	<u>5. -----인공지능 및 데이터</u> <u>기반 행정-----</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u> <u>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u> <u>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u> <u>임명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u> <u>단체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u> <u>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u> <u>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u> <u>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현행법령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교육청 국장급), 4급 이상 공무원(시군구),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부서의 장(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²³⁾ 2025년 현재 총 812개²⁴⁾

2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

기관에서 책임관 임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 데이터기반행정 시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기관 내 협의체 운영,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 공동활용 데이터 조사, 발굴 및 등록 관리, 기관 간 데이터 제공요청, 데이터 수집·활용 지원,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과제 발굴 및 활용 지원,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체 책임관이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총 6차례(2021년 4회, 2022년 2회) 개최된 것으로 파악됨. 협의회는 주요 안건으로는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등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공유·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개정안은 ① 책임관의 업무 범위에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② 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조율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을 말한다.

24) 행정안전부는 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60개(광역 17, 교육청 17, 기초 226), 공공기관 504개(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4)가 책임관을 임명한 것으로 설

명함.

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책임관 협의회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도 해당하고 이 기관들을 협의회 구성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력 확보 등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개정안은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 범위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 구축,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및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연구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분석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u>데이터 분석등 지원</u> 4. (생략)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 <신설> <신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u>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u>----- 4. (현행과 같음) 5. ----- <u>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관리에</u>----- 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 구축 및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8.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및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9.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이는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기반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개정안과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규정을 비교할 때, 개정안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도 인공지능 관련 업무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는 등 이론상으로는 구분될지라도 인공지능은 머신러닝·딥러닝 등 알고리즘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의사결정 기술을 개발·응용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 기반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인공지능 관련 업무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기준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세부적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도부터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인력²⁵⁾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관 차원의 역량 수준 진단·개선 지원 등으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2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기획·수행 능력을 갖춘 ‘데이터 전문인력’을 말함.

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는 국가 경제·안보·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 업무 지원의 성격 및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이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²⁶⁾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²⁷⁾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⁸⁾

2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8)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2024.

참고로, 「청년기본법」 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0) 등에서 유사입법례를 두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안 제21조제1항제6호), 공통기반 구축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같은 항 제7호),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같은 항 제8호)을 각 호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업무이므로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9) 「청년기본법」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3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개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 조사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u>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u> <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u>⑤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이는 시장성이 부족하여 민간이 투자·개발을 꺼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 협력기구로서 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협회의 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자가 협회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협회에 행정업무의 위탁과 해당 업무 수행 및 협회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격과 기준을 가지 자가 협회가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기관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어 보임.

따라서 법률에서 협회의 주요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인가의 공개·공시 절차와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

강학상 ‘인가’란 행정청이 특정 법률관계 당사자의 신청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법제실무상 인가를 받아 완성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그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임.³¹⁾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³²⁾, 「사립학교법」³³⁾ 등에서 유사입법례를 두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협회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인가를 취소하거나 취

31)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④ 시장·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3)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겠음.³⁴⁾

셋째, 협회의 업무 범위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
성의 지원”,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은 안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의 업무의 범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협회의 업무 범위
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여 중복 규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제 법
률 집행과정에서 전문기관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양 기관 간
협업 관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탁업무의 중복 및 분절적 업무수행
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넷째, 개정안은 협회에 대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 보조금의 범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

3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 협회가 수행하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경중을 고려할 때,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제실무상 특수법인이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거나 공익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협회는 특수법인으로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협회의 구성이 영리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의 소관 업무가 공익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섯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협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협회가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차.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근거 마련

개정안은 공공기관별로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획부터 개발·운영·고도화를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을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의 도입 시 공통기반을 우선 이용하는 노력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u> <u>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단계를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이는 공공부문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자원 전반, 예를 들어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데이터, 서비스, 개발·운영 환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

통기반의 구축·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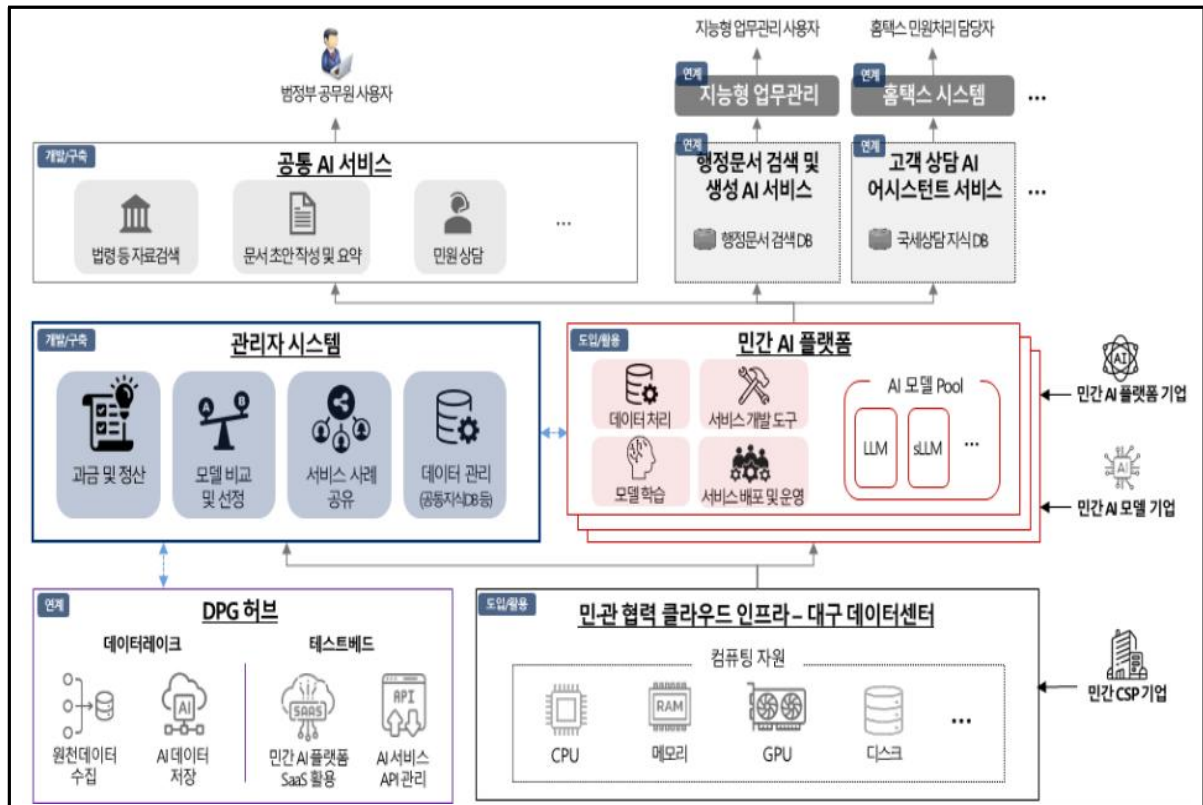
현재 정부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을 위해 2025년도에 총 98억 6,400만원(행정안전부 소관 53억 9,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사업예산 전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음.

이 사업은 민간의 여러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공공분야 전용으로 독립적인 영역에 구성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 도입하고, 이 모델이 정부 내외부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공통기반을 구현한 후, 각 기관은 공통기반의 초거대 인공지능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해당 모델이 각 기관의 특화된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하여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제공³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³⁶⁾

35)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내외부 지식검색, 문서 초안 작성 및 요약 등)는 동 사업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36)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11.

[법정부 생성형 인공지능 공통기반 목표모델]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이 출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재 정부가 구축 중인 공통기반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27조제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통기반 우선 이용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기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학습용 데이터의 관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 교육업무를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28조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학습용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u> <u>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를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29조(학습용 데이터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학</u>

습용 데이터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판단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성능은 학습되는 데이터 품질에 의존하고 저품질 데이터는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안 제29조제1항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공기관별로 품질관리의 수준이 달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표준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³⁷⁾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및 완전성을

3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을 예측하는 데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생산·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가공하는 표준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 연계성 확보와 아울러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³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진단 및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바, 이 경우 품질진단 및 평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³⁹⁾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려는 것인데,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 기준에 관

38)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4조(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와 달리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요소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의 요소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참여를 활성화하고 추진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파.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이를 목록으로 관리·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u> <u>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u> <u>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u> <u>용한 서비스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u> <u>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u> <u>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u>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이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매년 그 목록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안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0조에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관리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등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으로 예시함으로써 수범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하. 인공지능 영향평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 시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u> <u>제32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u>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u> <u>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방법·절차, 위험관리방안 수립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창발적 행동(Emergent Behavior)⁴⁰⁾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중국·호주·영국 등에서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해외 주요국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피해사례]

국가	사례명	배경설명	연동구조	창발적 행동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대응
미국	예측치안시스템 피드백 루프	범 죄 다 발 지역예측	과거 범죄 데이터 기반 예측 및 경찰 배치	특정 지역 과잉순찰 유발	흑인 지역 불평등 심화	일부 도시 사용 중단, 연방 논의

40)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창발적행동’이란 기술의 복잡성,데이터의 민감성 등으로 인해 시스템 간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

국가	사례명	배경설명	연동구조	창발적 행동	사회적 영향	법·제도적 대응
	얼굴인식 오인 체포	범죄자 식별 AI	CCTV와 경찰DB 연 계, 유사도 비교	흑인 오인 체 포 반복 발생	기술 인종차별, 인권 침해	도시별 사용 제 한, 규제 법안 발의
중국	사회 신용 및 감시 AI 오작동	신 용 점 수 기 반 통 제 시스템	공공·민간데이터 통 합 시감시망	정보 왜곡· 과잉 제재 발생	시민 자율검열 및 항고 불가 체계화	국제사회 비판, EU AI법 금지조 항 포함
호주	로봇덜 자동부과	자동부채 산정	국세청·복지부 연동, 주단위소득 계산	잘못된 부채 대량 발송	정신적 피해· 자살 사례	위법 판결, 전액 환급, 조사위 설 치
영국	IPIC 이민자 추방 AI	추 방 우 선 순위지정	이민청 DB와 자동 추천 시스템	인간 결정을 기계가 대체	시민 권리침해 및 비공개 행 정	알고리즘 규제논 의 확대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시 국민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⁴¹⁾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고영향

41)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

인공지능⁴²⁾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⁴³⁾가 해당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함.

이에 비해 개정안의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

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43)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비스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정안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차이점을 살펴보면, ① 평가대상의 경우 전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제품인 반면, 후자는 공공부문에 도입·활용되는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이고, ② 평가주체의 경우 전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인 반면, 후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됨.

이 중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장(「인공지능법」상 국가기관등)”은 중복 규정에 해당하는바, 중복성을 해소하지 않고 개정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한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유사한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반복하게 되는 혼란과 행정·재정상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받아 그 결과 평가목적 및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공공기관의 장이 도입·운영하려는 인공지능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인공지능 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의사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인 경우와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 지위를 갖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경우에는 이러한 협의기능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더욱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략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의 결과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미흡해 보임.

셋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처럼 법률에서 특정한 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과 비교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상의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특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과 기준 대강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이 포함됨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에너지법」⁴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⁴⁵⁾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9

44)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